

대학원 학술활동 지원비 지급에 관한 기준

제1조(목적)

대학원생에 대해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고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술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지원 대상)

국내 및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직접 논문을 발표(Poster발표 포함)하는 재학생(휴학, 수료생 제외)

제3조(지원 범위 및 금액)

1. 국내에서 발표하는 경우 금50,000원.
2. 국외에서 발표하는 경우 금100,000원.

제4조(지원 횟수)

국내 및 국외를 포함하여 학기당 2회

제5조(논문발표자의 인정 범위)

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자 중 직접 발표한 1인(증빙서류로 인증 가능해야함)

제6조(신청방법)

1. 지도교수에게 논문의 발표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신청
2. 논문발표일 해당 학년도 및 학기에 신청 한다.
(하계방학은 1학기, 동계방학은 2학기에 해당)

제7조(제출서류)

1. 학회 관련 증빙 자료 사본 1부.
2. 발표 확인 증빙 자료 사본 1부.
3. 학회참가 논문발표자 지원비 신청서 1부.

부 칙

1. 이 지침은 2019.3.1.부터 시행한다.